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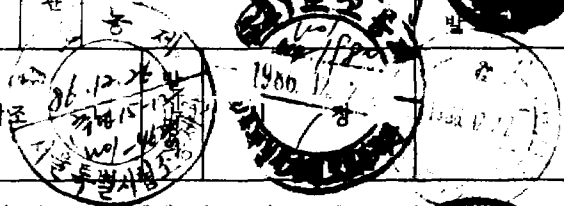


기 도	필요	○
발 딪	자료제공, 특 진	(인)
작 용	X	특 영 ○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수전30342- ¹² (전화: 362-3816)	시 행 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 신 처 보존기간	10년		
시행일자	86.12.		
보 조 기 관	상하수국참 권결	협 조 기 관 법무담당관 업무과장 협조응제	문 서 통 계
	수원기전과장		
	시설계장		인
기안책임자	장동권		
경 유 수 신 참 조	각안참조		
제 목	도시계획 사업(수도) 시행에 따른 서류공람 및 의 건		
(제1안): 내부결재			
1. 주공단지 1412-11954(86.12.12)호와와 관련입			
2. 서울특별시 고시 제894호 (86.12.12)호로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월계동 산 63 번지 일대 수도용지에 대하여 대한			
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사업(수도)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안과 같이 관계서류공람및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 현황도 1부.			

1505-25(2-1)일(1)갑
85. 9. 9.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
가 40-41 1986. 4. 8.

기 도	필요	○
발 딪	자료제공, 특 진	(인)
작 용	X	특 영 ○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수전30342- ¹²	(전화: 362-3816)	시 행 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 신 처 보존기간	10년		
시행일자	86.12.		
보 조 기 관	상하수국참 권결	협 조 기 관	법무담당관
	수원기전과장		업무과장
	시설계장		청장
기안책임자	장동권	문 서 통 계 인	
경 유 수 신 참 조	각안참조		
제 목	도시계획 사업(수도) 시행에 따른 서류공람 및 의 건		
(제1안): 내부결재			
1. 주공단지 1412-11954(86.12.12)호와와 관련입			
2. 서울특별시 고시 제894호 (86.12.12)호로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월계동 산 63 번지 일대 수도용지에 대하여 대한			
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사업(수도)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안과 같이 관계서류공람및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 현황도 1부.			

1505-25(2-1)일(1)갑
85. 9. 9.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
가 40-41 1986. 4. 8.

3) 시설물 배치도 1부.

4)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및 물건조서 1부.

5) 설계도 1부. 끝.

(제2안) 공고안

1986. 12. 18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986. 12. 18

도시계획 사업(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894호 (86.12.12)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월계동 산 63번지 일대 수도용지에 대하여 월계배수지 건설 공사를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해당구청 도시정비과및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6. 12. 18

1986. 12.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산 63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수도)

월계배수지 건설공사	
다. 사업규모및 면적 :	44,606m ²
배수지 용량 Q=100,000m ³	
락.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사장
마.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	1987. 1. 1. ~ 88.12. 31
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항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명세 : 별항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부
(545-2101 교환 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계3안)	
수신:	수신처 참조(토지소유자)
제목:	같은 건
1. 서울특별시 고시 제894호 (86.12.12)로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월계동 산 63번지 일대 수도용지에 대하여 배수지	
건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수도)를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2의	

1505-25(2-2)일(1)을
85. 9. 9.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 / 47
가 40-41 1985. 4. 8.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하였고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표시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나. 공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정비과및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부
(545-2101 교환 465)

다. 공람기간 : 1986. 12 - 1987. 1. 끝.

수신처 : 종로구 적선동 67-10 김보정의 ~~주~~인 .

(제4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 게재 의뢰


1. 도시계획사업(수도)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3조 2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문 내용과 같이 이를 공람 공고하였기 관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보게재 구분 : 공 고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사업(수도) 실시에 따른 서류공람 및

의견 청취 .
첨부: 1) 공고문 사본 2부.
2) 물건 조서 2부. 끝.
(제5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신문공고 의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894호(86.12.12)로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월계동 산 63번지 일대 수도용지에 대하여 월계배수지 건설 공사를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 2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관계서류및 도면 공람을 위하여 별첨 공고문 내용과 같이 신문공고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일간신문 공고
2개사 (3단 3x9)
나. 공고일시 : 1986. 12.
첨부: 1) 공고문 사본 2부.
2) 물건 조서 2부. 끝.
(제6안)
수신: 도봉구청장



참조: 도시정비과장
제목: 같은 건
1. 서울특별시 고시 894호(86.12.12)로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월계동 산 63번지 일대 수도용지에 대하여 월계배수지
건설공사를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 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다른 관계서류 및 도면공람을 위하여 별첨 공고문 내용과 같이 공람공고 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이 있을시는 의견서 첨부 공람결과
를 보고하기 바람.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현황도 1부.
3) 시설물 배치도 1부.
4) 사용도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5) 설계도 1부. 끝.
(제7안)
수신: 강남구 논현동 254 대한주택공사 
참조: 택지개발부장
제목: 같은 건
1. 단지 1412-11954(86.12.15)호와 관련입니다.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명 : 월계배수지 건설

2. 사업목적 :

본 월계 배수지 건설사업은 서울시의 상수도 수요변동및 시민의 안정 급수를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상계, 중계 대단위 주택단지외 도봉구 일원에 안정된 상수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개요

○ 위치 : 도봉구 월계동 산 63번지 일대

○ 면적 : 44,606m²

○ 시설개요 : 배수지 4지 (100,000톤)

송배수관로 D= 1,650 - 1,500mm

L= 12km

기타 부대공 1식

○ 사업비 : 152 억원

○ 사업기간 : 1987. 1 - 1988. 12. 31

4. 년도별 자원조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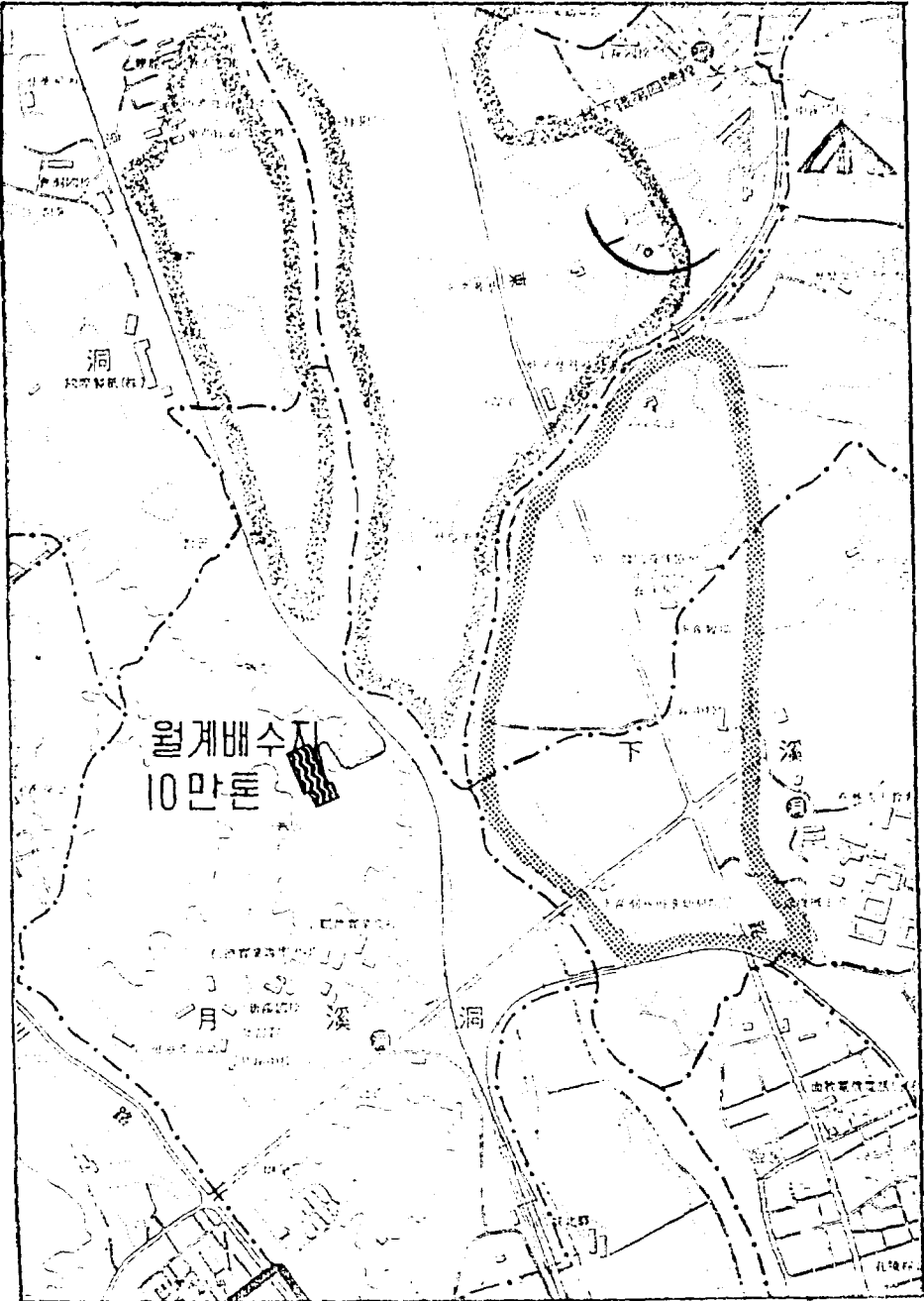
(단위;백만원)

재원별/년도별	계	'87	'88	비 고
계	152	124	28	
시 비	82	82	-	
주공부담	70	42	28	

5. 효 과

- 중계,상계 대단위 주택단지 및 도봉구 일부지역 급수수요대비
- 일정 수압 유지로 관말지역 출수불량 해소및 누수방지
- 계획시간대의 최대 급수량 확보
- 비상 저수조 확보 .

월계 배수지 위치평면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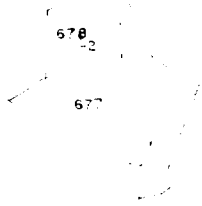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유자		관계인		권리자 의 종류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월계동산5번지	임야	155,603	김보정 이준영	종로구 적선동 67-10 종로구 명륜동1가36-16			
2	산4-2	임야	12,982	유덕상 장성환 민영우 서정자 진승철	구로구 시흥동937-16 휘미리 다동 104 강남구 압구정동 288 현대 아파트 113동503호 강남구 반포동 281구획 1나 용산구 연효로1가 17- 140 영등포구 대림동1068-9	김정성 이인호 장성환	동대문구 휘경동286-57 영등포구 당산동 강남 아파트 11동 509호 좌 동	근저당권 --- ---
3	산 4-5	임야	9,729	이혜자	강남구 천호동 461-107	이희택 이희철	동대문구 전농동 166- 44 성북구 장위동 66-261	가등기
(산 62	임야	23,603	유성권	성동구 신당동 123			
5	산 63-3	임야	7,934	국유지				
6	산 63-2	임야	8,231	오세민	중구 수하동 17			

7	산 63-1	임야	3,769	하승주	강남구 학동 시영주택 11-16			
8	산64-1	임야	13,686	서영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32			
9	산 65-5	임야	8,132	김소매	성동구 광장동 300-2			
10	산 65-2	임야	11,306	송덕길 송승준 송용준 이명순 송재희 송재형	강동구 잠실5동 515-1204 성동구 중곡동 113-7 — " — — " — 성동구 구의동45-1 — " —	동부세무서		압류
11	666-5	주거	1,227	국유지				
12	677-2	주거	612	국유지				

발급번호 제 244 호

면 적 증 정 도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구	월 계 동	677-2번지	3 필	축척	1:200	분지1
추 량	198	년	월	일	추량자	지적기사	급	



677
1.27

677 -2	-	31
*	L	214
*	C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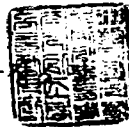
(본 도면은 추량에 사용할 수 없음)

서기 198⁶ 년 11 월 26 일

작성자 지적 사 급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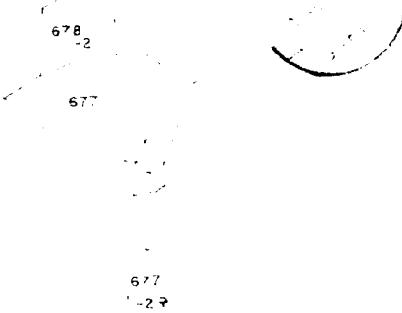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지사 구 출



발급번호 제 249 호

면 적 측 정 도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구	월계동	677-2번지	3필	측척	1:200	분지1
측량	198	년	월	일	측량자	지적기사	급	



677	-2	31
		214
		367

(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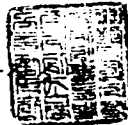
서기198⁶년 11월 20일

작성자 지적 사 급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월계동지구출



서 울 특 별 시

시설 30312-111 (365) 86. 12. 12.
 수신 수원기전과장 한우
 제목 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 수전30340-448호(86.11.22)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결정및 지적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및 도면 1부. 끝.

선발	영시선 양	☑	결재	기관
접수일시	1986.12.12. 17시00분	번호	(공인)	
처리과	시설계	2916		도시계획

수원기전과장 이인영

시 설 계 획 과 장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74 호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수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도봉구청 도시 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2. 12.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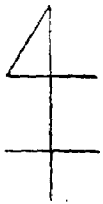
○ 변경결정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m ²)	비고
기정	수도	도봉구 월계동 산63일대	40,000	
변경	"	"	44,606	증)4,606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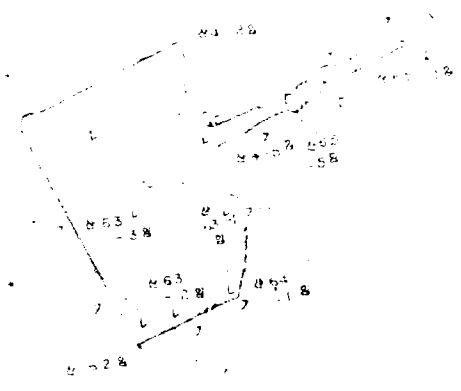
○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발급번호제 198 호 면 적 측량 도

보지소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영등포동	번지	198	원	측량	198	년	월	일	주방사	지적기사	출	분지1
측량	198	년	월	일	주방사	지적기사	출									



비판
 지명 지방지적기사
 김석화
 김명근 김익환
 198. 1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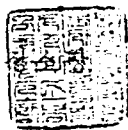



63-1	7	148877
63-2	7	14736
63-3	7	11219
63-4	7	1415
63-5	7	148
63-6	7	5228
63-7	7	4086
63-8	7	415
63-9	7	2240.6
63-10	7	119.7
63-11	7	12.7
63-12	7	6727
63-13	7	992
63-14	7	7239
63-15	7	334
63-16	7	3423
63-17	7	13749
63-18	7	637
63-19	7	221
63-20	7	995
63-21	7	6415
63-22	7	238
63-23	7	132
63-24	7	7062

(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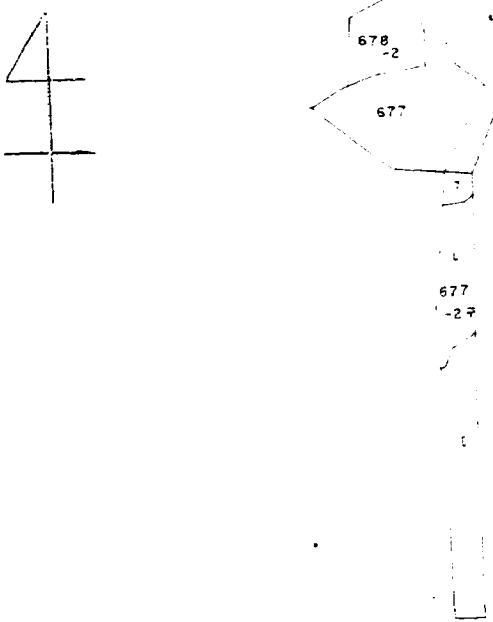
서기 1987년 12월 9일

작성한
 1987년 12월 9일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출



발급번호제 244 호 면 적 증 정 도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구	월계동	677-2번지	3필	측척	1.200	분지1
측량	198	년	월	일	측량자	지적기사	급	



지적기사
지적사
1986. 12. 9

677	-2	31
.	L	214
.	C	367

(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서기1986년 11월 26일

작성자 : 지적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발급번호제 244 호

지 적 기 관 정 도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구 을계동 666번지 3필	측척	1.200 분지1
측량	198	년	월	일
측량자	지적기사		급	



666-5

지적기사
기
의
6 12 P

666		
-5		544
		251
		432

(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서기 1986년 11월 26일

작성자 666-1-2 지적 조사장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구 출장소장

